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6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누32819 농어촌특별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1.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3.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4.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5.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6.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7. [redacted]시 [redacted]청장
8.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9.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10. [redacted]시장 (경정 전 :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11.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12.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13.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14. [redacted]시장
15.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6

16.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17. [redacted]시장

18. [redacted]시장

19. [redacted]시장

20.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21.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22. [redacted]시장

23. [redacted]군수

24. [redacted]군수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30. 선고 2015구합6871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6. 14.

판 결 선 고 2016. 7.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 [redacted]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redacted]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redacted]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과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redacted]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6

이 별지 목록 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환급세액란 기재 각 해당 농어촌특별세의 감액경정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경정 전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6. 7. 4.부터 [redacted]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하여 [redacted]시 [redacted]구가 폐지되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관할하던 농어촌특별세에 관계되는 권한이 [redacted]시장에게 승계되었으며, 이에 이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를 종전의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에서 "[redacted]시장"으로 경정하였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에 대한 소는 취하되고, [redacted]시장에 대한 소만 존재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제11행, 제17행의 각 "피고들"을 "피고 [redacted]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으로 고치고, 제3면 아래에서 제2행 다음에 "아. 경정 전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2016. 7. 4. [redacted]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하여 폐지되고, 그 소관사무 중 농어촌특별세에 관계되는 권한은 피고 [redacted]시장이 승계하였다."를 추가하며, 제6면 제11행 "위"부터 제20행 "없다."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이 사건 장부가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장부가액을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6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9701 판결은 현물출자를 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감정한 감정평가액을 장부에 기재한 사안에서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 인정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이 못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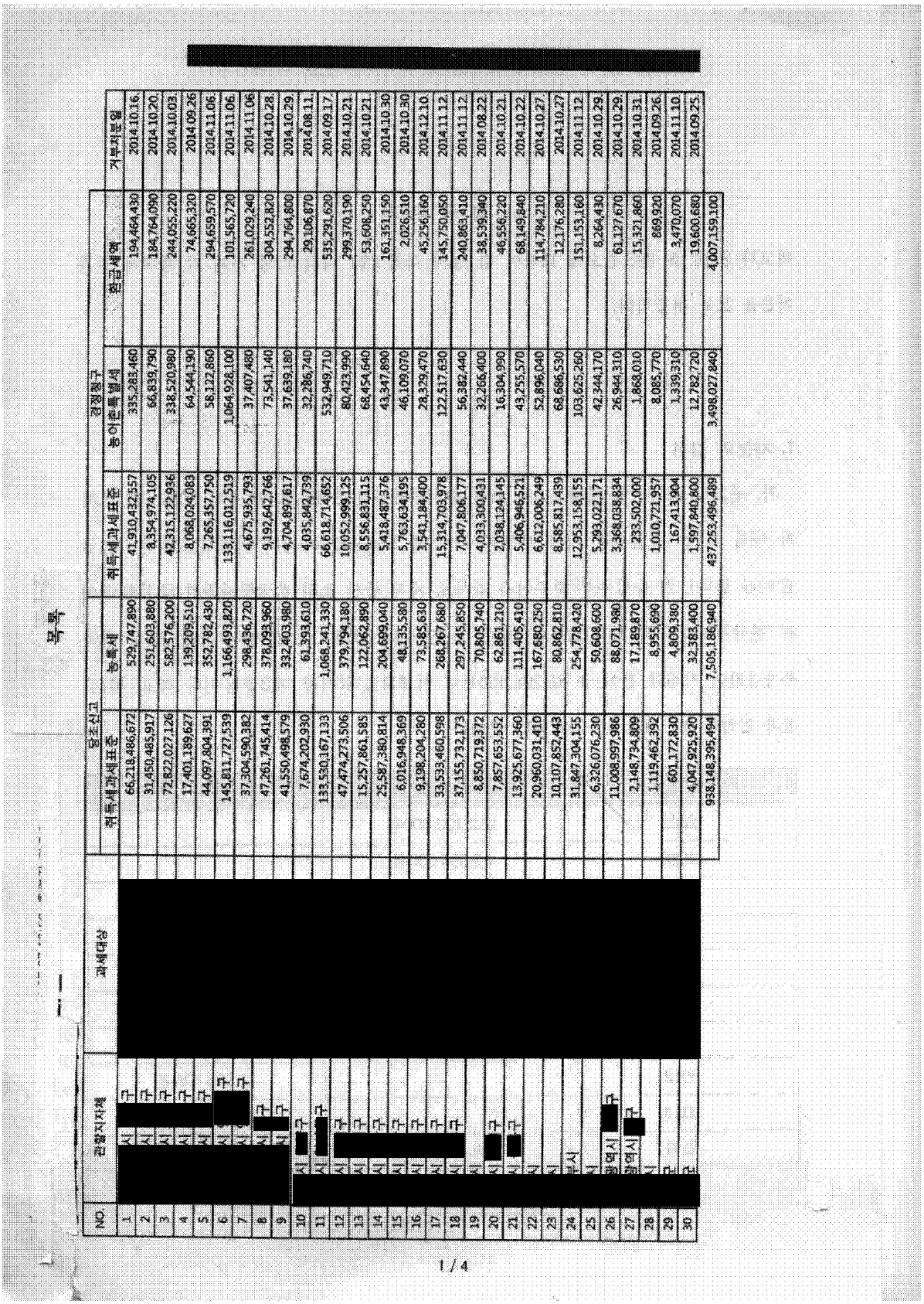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redacted]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구소인 원고의 경정 전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에 대한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피고 경정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실효되었다), 나머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상열

판사 정봉기

판사 조용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06



목록

NO	관할지자체	과세대상	당초신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일
			취득세과세표준	농특세	취득세과세표준	농어촌특별세	환급세액	
1	시	[redacted]	66,218,486,672	529,747,890	41,910,432,557	335,283,460	194,464,430	2014.10.16.
2	시	[redacted]	31,450,485,917	251,603,880	8,354,974,105	66,839,790	184,764,090	2014.10.20.
3	시	[redacted]	72,822,027,126	582,576,200	42,315,122,936	338,520,980	244,055,220	2014.10.03.
4	시	[redacted]	17,401,189,627	139,209,510	8,068,024,083	64,544,190	74,665,320	2014.09.26.
5	시	[redacted]	44,097,804,391	352,782,430	7,265,357,750	58,122,860	294,659,570	2014.11.06.
6	구	[redacted]	145,811,727,539	1,166,493,820	133,116,012,519	1,064,928,100	101,565,720	2014.11.06.
7	시	[redacted]	37,304,590,382	298,436,720	4,675,935,793	37,407,480	261,029,240	2014.11.06.
8	시	[redacted]	47,261,745,414	378,093,960	9,192,642,766	73,541,140	304,552,820	2014.10.28.
9	시	[redacted]	41,550,498,579	332,403,980	4,704,897,617	37,639,180	294,764,800	2014.10.29.
10	구	[redacted]	7,674,202,930	61,393,610	4,035,842,739	32,286,740	29,106,870	2014.08.11.
11	구	[redacted]	133,530,167,133	1,068,241,330	66,618,714,652	532,949,710	535,291,620	2014.09.17.
12	시	[redacted]	47,474,273,506	379,794,180	10,052,999,125	80,423,990	299,370,190	2014.10.21.
13	구	[redacted]	15,257,861,585	122,062,890	8,556,831,115	68,454,640	53,608,250	2014.10.21.
14	구	[redacted]	25,587,380,814	204,699,040	5,418,487,376	43,347,890	161,351,150	2014.10.30.
15	구	[redacted]	6,016,948,369	48,135,580	5,763,634,195	46,109,070	2,026,510	2014.10.30.
16	구	[redacted]	9,198,204,280	73,585,630	3,541,184,400	28,329,470	45,256,160	2014.12.10.
17	구	[redacted]	33,533,460,598	268,267,680	15,314,703,978	122,517,630	145,750,050	2014.11.12.
18	구	[redacted]	37,155,732,173	297,245,850	7,047,806,177	56,382,440	240,863,410	2014.11.12.
19	구	[redacted]	8,850,719,372	70,805,740	4,033,300,431	32,266,400	38,539,340	2014.08.22.
20	구	[redacted]	7,857,653,552	62,861,210	2,038,124,145	16,304,990	46,556,220	2014.10.21.
21	구	[redacted]	13,925,677,360	111,405,410	5,406,946,521	43,255,570	68,149,840	2014.10.22.
22	구	[redacted]	20,960,031,410	167,680,250	6,612,006,249	52,896,040	114,784,210	2014.10.27.
23	구	[redacted]	10,107,852,443	80,862,810	8,585,817,439	68,686,530	12,176,280	2014.10.27.
24	군	[redacted]	31,847,304,155	254,778,420	12,953,158,155	103,625,260	151,153,160	2014.11.12.
25	시	[redacted]	6,326,076,230	50,608,600	5,293,022,171	42,344,170	8,264,430	2014.10.29.
26	광역시	[redacted]	11,008,997,986	88,071,980	3,368,038,834	26,944,310	61,127,670	2014.10.29.
27	광역시	[redacted]	2,148,734,809	17,189,870	233,502,000	1,868,010	15,321,860	2014.10.31.
28	시	[redacted]	1,119,462,392	8,955,690	1,010,721,957	8,085,770	889,920	2014.09.26.
29	구	[redacted]	601,172,830	4,809,380	167,413,904	1,339,310	3,470,070	2014.11.10.
30	구	[redacted]	4,047,925,920	32,383,400	1,597,840,800	12,782,720	19,600,680	2014.09.25.
			938,148,395,494	7,505,186,940	437,253,496,489	3,498,027,840	4,007,159,100	

1 / 4